

{별지 제1호 서식}

감 사 보 고 서

교육부 장관 귀하

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회 귀중

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, 학교법인 우석학원(우석대학교)의 2025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,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 81423-232: 2003. 2. 25)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.

감사결과(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우석학원(우석대학교)의 재산상황·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법령에 의거 적정하게(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)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.

다음: 지적사항 내용

구 분	재산·회계감사 지적사항		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(건)	비고<지적사항 없는 경우: 지적사항 없음(표기)>
	건수	금액(천원)		
1. 법인 일반업무 관련	0		없음	
2. 법인 수익사업 관련	0		없음	
3. 학교 관련	0		없음	
4. 부속병원 관련	0		없음	
계	0			

- 붙임: 1. 학교법인 우석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조치계획(별지 제1의1호 서식)
2. 우석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(별지 제1의 2호 서식)
3.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
- 2026년 4월 30일

학교법인 우 석 학 원
감 사 정 승 우

(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9852호)

감 사 방 근 배

※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

피감사기관장

2026년 4월 30일

학교법인 우 석 학 원

이 사 장 서 창 훈

피감사기관장

2026년 4월 30일

우 석 대 학 교

총장 박 노 준



{별지 제1의1호 서식}

학교법인 우석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년도: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)

지적사항(내용): 법인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■ 법인 일반업무회계 - 특이사항 없음 ■ 법인 수익사업회계 - 특이사항 없음	■ 시정 조치 계획

피감사 기관장 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 서 창 훈

직인 (사인)



(법인 일반업무회계 · 수익사업회계)

우석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년도: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)

지적사항(내용): 교비회계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■ 우석대학교 회계 - 특이사항 없음	■ 시정 조치 계획

피감사 기관장 우 석 대 학 교 총 장 박 노 준

직인 (직인)

우석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

(회계년도: 2025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)

지적사항(내용): 부속병원회계

감사결과 지적사항(내용)	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
■ 부속병원 회계 - 특이사항 없음	■ 시정 조치 계획
피감사 기관장 <u>우석대부속전주한방병원장 박수정</u> (인)	

(부속병원회계)

교 육 부 장관 귀하
학 교 법 인 이 사 회 귀중

監 査 報 告 書

2025회계연도 2025년 3월 1일부터
2026년 2월 28일까지

붙 임

1. 법인 감사보고서(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2. 대학교 감사보고서(교비회계·부속병원회계)

- 감사보고서(별지 제9호 서식)의 피감사자(입회인) 서명
날인은 법인: 사무국장, 대학교: 사무처장, 부속병원: 경리부장
등 재무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(법인:이사장·대학교
:총장)으로 할 수 있음.
-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(별지 제9호서식의1호)은
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(대재 81423-232: 2003.2.25)별지
제1의 1호 및 2호 서식을 붙임으로 같음함.

학 교 법 인 우 석 학 원

우 석 대 학 교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우석학원의 2025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,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학교법인 우석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,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우석학원의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절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6년 4월 30일

학교법인 우 석 학 원

감 사 정 등 우 (인)

감 사 방 은 백 (인)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 사무국장

성 명 정 희 석 (인)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법인 일반업무회계·수익사업회계)

감 사 보 고 서

학교법인 우석학원 이사장 귀하

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우석대학교의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·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.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.

우리의 의견으로는(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)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·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우석대학교의 2026년 2월 28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.

2026년 4월 30일

학교법인 우 석 학 원

감 사

정 등 우 (인)

감 사

방 근 매 (인)

피감사자(입회인)

직 명

사무처장

성 명

서 용 영 (인)

※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

(학교회계·부속병원회계)